

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심사 보고

1997. 3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-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 17)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)

가. 제안 이유

-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의 개정에 따른
시험항목·검체소요량 조정 및 용어정비와
-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(환경부령)에 따른
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율 인상을 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먹는샘물, 수처리제 및 토양오염 물질에 관한 시험항목 신설과 용어정비
-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정
- 각종 검사수수료를 물가안정과 주민부담을 감안 소폭 인상조정

3. 검토보고 (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-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제·개정과
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(환경부령) 개정에 따른
검사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
- 환경부령에는 신규검사항목 포함 평균 60.4% 인상으로 되어 있으나
물가안정 및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하에
이번에는 평균 8.5%를 인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
- 인근 타시도 지역 민원인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도를 이용할
경우 도민의 간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며
- 향후 빈번한 조례개정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
타시도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한 자동 연동방식의 수수료 책정방법에
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상위법령의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 해소와
타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수요자 수혜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가
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음

6. 수정안 요지

- 각종 검사 수수료를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수정 (안 제7조)
- 각급학교,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50% 감면은
도내에 소재한 학교와 군부대에 국한 (안 제9조 제9호)

6. 심사결과

- 수정 동의한 6인 중 6인 찬성으로

안 제7조 제1항을

"① 검사·시험 등의 수수료는 "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"과 "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"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하여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"로 수정하고

(별표 2)를 삭제하며

안 제8조 제4항 중 "별표2"를 "제7조 제1항"으로 수정하고

안 제9조 제9호

"각급학교,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% 감면"을 "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,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% 감면"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

※ 참고자료

- 수정전 개정조례(안)
- 수정전 신구조문 대비표